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평창

2017년 10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18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0. 18.(수)	담당부서	석유산업과
담당과장	박재영 과장(044-203-5220)	담 당 자	김기동 사무관(044-203-5227)

종합보세구역 내[內] 석유제품 혼합제조 전면 허용
석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시행

- 국제석유거래량 확대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기대 -

□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자*가 종합보세구역에서 **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해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것이 10월 19일부터 전면 허용**된다.

* 국제석유거래업자 :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석유사업자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신설,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(이하 '석유사업법')이 **개정**(법률 제14774호, '17.4.18 공포)됨에 따라 **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, 석유제품 혼합제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월 19일부터 개정·시행**한다.

□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포함한 **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① 국제석유거래업자가 **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**했으며, **국제석유거래업자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,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**했다.

○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방법으로 **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,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,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등을 허용**하며,

-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은 기존에는 수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**수출이나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자를 통한 경우 수입도 가능**하다.

○ 또한, 이번에 신설한 **국제석유거래업은 '글로벌 석유트레이더'의 국제유치 촉진을 위해 신고제로 운영**한다.

- 즉, 국제석유거래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를 **사업계획서, 석유저장시설 소유·임차 현황 자료와 함께 석유관리원에 제출**하면 된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에 따라 **국제석유거래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**(영업장 폐쇄, 사업정지 등)**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**했다.

- **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**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, 가짜 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**영업시설을 설치**하거나 **품질검사 등을 방해** 할 경우는 사업정지(3~6개월)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,

- **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과태료**(2천만원 이하)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각국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어 국내 **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**되고 **국제석유거래업자의 사업성이 향상**될 것으로 기대되며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0-18 10:55:48

-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**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**한다고 언말다.

② 석유제품 **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2년 6개월 연장**하여 '19.12.31까지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○ 이번 전자상거래 환급기한 연장은 정유사, 주유소 등 **석유제품 거래 당사자들*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촉진**하기 위한 것으로

* 매도자 -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, 대리점 / 매수자 - 석유수출입업자, 대리점, 주유소, 일반판매소 등

○ 2016년말 기준 석유(휘발유·경유)소비량의 8.4% 수준인 석유제품의 **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**된다.

③ 석유사업자에 대한 **과징금을 사업정지 기간에 비례해서 부과**해 현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산정하고 있는 **과징금 부과액의 형평성을 개선**했으며,

○ 주유소의 주간 수급거래 상황보고가 정착되고 보고율도 안정화* 함에 따라 경과실로 인한 **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 미보고에 대해** 기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**앞으로는 1회 미보고의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**했다.

* 주유소 보고율(%) : '14.7월(99.1) → '15.7월(99.8) → '16.7월(99.8) → '17.7월(99.9)

【붙임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

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기동 사무관(042-203-52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**석유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**

1. 개정 배경

□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등 **「석유사업법」 개정(4.18) 후속조치**

○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, 종합보세구역內 석유제품 혼합·제조 방법, 행정처분 기준 등 **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정리**

○ 보세구역內 품질보정 규제완화(허용범위 확대 및 사전통지 의무 삭제)

□ **행정 효율성**을 위한 **일부업무 지방위임**, 수급거래상황 미보고에 대한 **행정처분 완화** 등 **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·보완**

<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>

개정내용	현 행	개정(안)
< 법 개정 후속조치 > ○ 종합보세구역내 혼합 제조 방법 ○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○ 행정처분, 과태료 등	<신 설>	○ 석유제품 등의 혼합제조 방법 규정 ○ 신고 서류·절차 규정 ○ 행정처분·과태료 기준
< 현 제도 개선·보완 > ○ 일부사무 지방 위임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○ 미비점 개선·보완 등	○ 산업부에서 수출입업 등록·관리 ○ 수급거래 1회 미보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○ 수입부과금 환급기간이 '17.6.30일자로 일몰	○ 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시·도로 이양 ○ 수급거래 1회 미보고 시 경고제도 도입 ○ 수입부과금 환급기간이 '19.12.31일까지 연장

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0-18 10:55:48

2. 주요 개정내용

< 법 개정 후속조치 >

1 **(석유제품 등의 혼합) 종합보세구역內에서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석유제품 등의 혼합제조** 방법을 규정

* 법 제2조(국제석유거래업) : 종합보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보세구역내 거래하는 사업

○ **국제석유거래업 신설, 혼합제조 활성화** 등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종합보세구역에서의 **석유제품 혼합제조 방법을 최대한 허용**

⇨ **시행령 제2조의2(석유제품 등의 혼합) 신설**

* 종합보세구역내 혼합제조 방법으로,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, ②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, ③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규정

2 **(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)** 법 위임사항에 따라 **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(휴·폐업, 변경신고 포함) 요건 및 절차** 등을 규정

* 법 제9조의2(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), 제12조(사업의 개시·휴업 및 폐업의 신고)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요건, 절차 등 규정

○ 실물거래 없는 **소규모 국제석유거래 사업자의 난립 방지 및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의 이용 활성화**(국회 산업위 의결사항)를 위해,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요건으로 **보세구역내 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임차**를 요구

⇨ **시행령 제45조(권한의 위탁 등)**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, 확인증 발급 등 권한을 **석유관리원에 위탁**

⇨ **시행규칙 제11조(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)** 국제석유거래업의 **신고 서류 및 절차, 변경신고 사항** 등을 신설, **제15조**(사업의 개시·휴업 및 폐업 신고)에 **국제석유거래업 추가**

* 신고서류 및 절차 :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(별지 서식) 및 사업계획서, 보세구역內 석유저장시설의 보유(독점적 사용권 포함) 현황 자료→ 석유관리원에 제출

3 **(법위반시 행정처분 등)** 법 제13조(등록의 취소 등) 규정 및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, 국제석유거래업자의 법규 위반에 대한 **행정처분,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** 마련

⇨ **시행규칙 제16조(행정처분 기준)** 법 제13조 단서조항에 따라 거짓·부정신고 및 폐업, 결격사유 해당, **보세구역 밖에서의 석유거래, 종합보세구역 밖에서의 석유제품 제조의 경우 즉시 "영업장 폐쇄"**, 여타의 경우는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동일 수준으로 규정('사업정지 3개월→6개월→영업장 폐쇄' 등)

⇨ **시행령 제47조(과태료 부과·징수), 시행규칙 제17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)** 등에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항목 추가

4 **(석유제품의 품질보정)** 보세구역內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**품질관리체계 변경**(품질보정계획 등 사전통지 의무 삭제)

⇨ **시행규칙 제33조제2호**의 품질보정계획 등의 **사전 통지 의무조항을 삭제**하고, 제3호의 품질검사시 보정에 사용된 제품 및 보정 방법 등을 석유관리원에 제출토록 규정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< 현 제도 개선·보완 >

1 **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** (영 제27조)

○ **(개정배경) 석유제품 전자상거래* 활성화**를 위해 정유사 등에 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주고 있으나 **환급기한이 '17.6.30 종료** 예정

* 매수자 중심의 시장 조성을 통해 시장 참여 주체의 **자발적 참여와 경쟁 촉진**, 정유사-대리점-주유소간 수직적 거래관행을 해소하여 **거래 투명성 제고**

○ **(개정방안)**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6월 30일에서 **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6개월 연장**

* 조특법 법인(소득)세 세액공제 일몰기한인 '19년말에 맞춰 환급기한 설정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0-18 10:55:48

○ **(기대효과)**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**석유유통 시장 경쟁촉진** 및 **소비자 판매가격 인하*에 기여**

* **(소매가격)**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참여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비참여 주유소 대비 ℓ당 휘발유 25.1원, 경유 25.9원 저렴('16년)

2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 권한 시·도에 위임 (영 제45조제1항)

○ **(개정배경)** 업무특성 상 **일반대리점 업무와 유사**한 석유수출입업 등록·관리 업무에 대하여 **시·도에 위임하여 행정효율성*** **제고**

* 일반대리점 등록 접수·확인과 현장점검은 석유관리원에서 수행, 석유수출입업 등록·관리는 시·도에서 담당하는 위임·위탁 협의(시·도 담당자 회의, '17.3.31)

○ **(개정방안)** 수출입업자의 등록·관리를 **산업부에서 시·도로 위임**

* 등록신청서의 접수, 신청내용 확인, 현장점검 및 등록대장 관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석유관리원에서 수행

○ **(기대효과)**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업무와 수시로 발생하는 변경 등록 업무에 대한 **민원편의 제공**

3 일반대리점 등 등록(확인)업무 석유관리원에 위탁 (영 제45조제8항)

○ **(개정배경)** 일반대리점 등의 신규 등록과 **휴·폐업 반복***으로 등록요건(저장탱크) **관리부실****과 **유통질서 저해**행위 발생

* '15년 일반대리점 점검(563업소 대상) 결과 정상운영은 512업소(영업 447업소, 휴업 16업소, 폐업 49업소), 주소지 불명 등 확인불가능 51업소 확인

** 영업 중인 447업소 중 등록요건 부적합 17업소, 변경등록 의무위반 3업소 적발

○ **(개정방안)** 시·도의 등록업무(일반·용제대리점, 부생연료유판매소) 중 접수·서류확인,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**석유관리원에 위탁**

○ **(기대효과)** 부실대리점의 석유판매업 등록 방지를 통한 석유**유통질서 저해행위 예방** 및 **석유사업자 현황 관리 강화**

4 수급거래상황보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 (영 별표8)

○ **(개정배경)** 수급거래 상황보고가 **정착되고 보고율도 안정화***됨에 따라 수급거래상황 **미보고에 대한 제재규정 완화**

* 주유소 보고율 : '14.7월 (99.1%) → '15.7월(99.8%) → '16.7월(99.8%) → '17.7월(99.9%)

○ **(개정방안)** 실수 등의 **1회 미보고**에 대하여 **경고 제도 도입**

* 과태료 기준 : (현행) 50만원 / 1회 위반 → (개정) **경고** / 1회 위반

○ **(기대효과)** 경과실로 인한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**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**

5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관련 정비 (규칙 별표2)

○ **(개정배경)** 법제처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**법령 정비요청**('17. 4월)

* 영업정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변동이 있으나, 과징금은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

○ **(개정방안)** **영업정지 일수**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비

* 예) 액법 과징금 부과금액 = (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) × (영업정지 일수) × 0.18

○ **(기대효과)**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**형평성 문제 해소**

6 석유대체연료 수급거래 상황보고 접수기관 변경 (규칙 별표8)

○ **(개정배경)**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**수급거래 상황을 보고받는 기관이 석유관리원과 석유공사로 이원화**

○ **(개정방안)**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수급거래 상황 보고를 석유관리원이 받도록 하여 **수급상황 보고 접수기관을 일원화**

○ **(기대효과)**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정보의 **통합관리를 통한 자료 활용도와 업무 효율성 제고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0-18 10:55:48